

(뉴타운개발과)

도시재정비 촉진(뉴타운)계획 수립

□ 사업개요

- 대상지 : 3개지구, 6157천m²(원미1,915천m², 소사2,497천m², 고강 : 1,745천m²)
- 용역비 : 5,391백만원
- 추정사업비 : 26,500,000백만원
- 계획세대 : 77,790세대(원미 17,500, 소사 36,160, 고강 24,130)

□ 추진실적

-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: 2007. 04. 25
-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선정(건교부) : 2007. 06. 28
- 고강재정비촉진 시범도시 선정(환경부) : 2007. 07. 23
- 공청회 개최 (3개 지구, 3회 8,000명) : 2008. 07. 15 ~ 29
- 원미,소사,고강 도시재정비촉진계획(안) 결정신청 : 2008. 9 ~ 11
- 촉진계획 및 의견수렴
 - MP 및 총괄계획팀 회의 : 3개 지구 164 회
 - 주민 설명회 개최 : 3개 지구, 28회 15,650명(주민, 시민단체, 가칭추진위 등)
 - 시·도의원 설명회 : 3회 67명
 - 뉴타운 관계자 세미나 개최 : 3회 245명
 - 감독회의 등 참여 기술자 회의 : 3개 지구, 55회 425명

□ 향후계획

-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: 2008. 11 ~12
- 사업추진 : 2009. 01 ~ 2020. 12 (12년간)

□ 기대효과

- 명품 복합뉴타운 건설 : 3개지구
- 생태환경도시 조성
- 수혜주민 : 3개지구 77,790세대 210,000명

도시재정비 촉진관련 조례제·개정

□ 사업개요

○ 조례제·개정 : 2건

-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
-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개정

○ 제·개정사유

· 부천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

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

·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

-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규해석에 따른 일부조항 개정
- 그밖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추진실적

-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: 2008. 6
-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조례 개정 : 2008. 6

□ 추진성과

-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시스템 구축